

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# 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  
전문위원 손윤목

#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회부경위

본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5월 3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6월 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## 2. 제안이유

- 「시도의회의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두도록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됨에 따라
- 충청북도의회의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해 의회사무처에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정원을 둘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근거법령 정비근거법령 추가 (안 제1조)
  - (현행) 지방자치법 제90조, 제91조
  - (개정) 지방자치법 제90조, 제91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

○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 근거조례 추가 (안 제5조)

- (현행)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
- (개정)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, 충청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

#### 4. 검토의견

금번 개정조례안은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이 시도의회의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두도록 개정됨에 따라, 충청북도의회의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해 의회사무처에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정원을 둘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.

붙임 :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1부. 끝.